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5. 11.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 사 경 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7666호)	김선교의원	2025. 1.21.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4.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7761호)	서천호의원	2025. 1.23.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4.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5.9.29.)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9.30.)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종별수협 해산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현행 15인에서 수산물가공수협 최소 조합원 수와 동일한 7인으로 완화하는 한편, 과거 지구별수협 최소 조합원 수 기준이 개정되면서 함께 정비되지 못한 준용규정의 오기(誤記)를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및 제113조).

법률 제 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 후단 중 ““200인 미만”은 “15인 미만”으로”를 ““100인 미만”은 “7인 미만”으로”로 한다.

제113조 후단 중 “200인 미만”을 “100인 미만”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8조(준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및 제6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은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20인 이상”으로, 제47조제3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3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	제108조(준용규정) ---------- --.

호·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4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2호”는 “제107조제1항제2호”로, 제47조제4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60조제4항 중 “제1항제8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5항 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8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07조제1항제2호”로, 제6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3호”로, 제63조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2호나목”은	----------

“제107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제84조제4호 중 “200인 미만”은 “15인 미만”으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본다.	----------“100인 미만”은 “7인 미만”으로----------.
제113조(준용규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 제1항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람 7인 이상”으로, 제47조제3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12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113조(준용규정) ----------. ----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3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제4호”는 “제1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4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2호”는 “제112조제1항제2호”로, 제47조제4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는 “제1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60조제4항 중 “제1항제8호”는 “제112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5항 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제112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8항제2호 중	----------

“제1항제2호”는 “제112조제1항제2호”로, 제6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4호”는 “제112조제1항제3호”로, 제63조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112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제84조제4호 중 “200인 미만”은 “7인 미만”으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는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본다.	----------100인 미만----------.